

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 주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(제주)2025누10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 A조합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○○
피고, 항소인 ○○시장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○○
제 1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5. 4. 22. 선고 2024구합5944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9. 10.
판 결 선 고 2025. 10. 1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2. 9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7,078,140원, 지방교육세 9,231,160



원, 농어촌특별세 4,601,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,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(별지 및 약어 포함)한다.

○ 제1심판결 3쪽 1행, 3쪽 1행, 18행, 4쪽 5행, 21행의 각 "법 제178조 제1호"를 "법 제178조 제1항 제1호"로, 4쪽 7행의 "법 제2조 제1호"를 "법 제2조 제1항 제1호"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6쪽 표 아래 5행과 7쪽 20행의 각 "2022. 5. 8."을 "2022. 5. 18."로 고쳐 쓴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건물 중 농산물,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수산물 매장, 임대 매장, 공산물 매장 등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, 이 사건 토지 중 위 고유업무 외로 사용되는 건물 부분의 부지에 대하여는 애당초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불가능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



중 위 고유업무 외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.

나. 판단

1) 관련 법리

추징처분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하고 그 후에 당초의 면제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 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,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,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(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11677 판결 등 참조),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,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235 판결, 대법원 1988. 6. 7. 선고 87누1079 판결,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. 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'정당한



사유'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 조항이 정한 추정요건을 갖
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.

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추정사유
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(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이
예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
접 사용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가 그러
한 사정을 추정사유로 삼지 않았음은 명백하다),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
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 건물 부분을 원고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
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사정으로 처분 당시 추정요건을 결여하여 위
법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. 이와 다
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
같이하여 적법하다.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송○○

판사 강○○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16

판사 강○○